

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6]

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

(제16조 관련)

구분	특정소방대상물	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
1.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	석재, 불연성금속,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· 기계조립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	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 비
2.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하기 어려운 특정소방 대상물	펄프공장의 작업장,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	스프링클러설비, 상수도소 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 비
	정수장, 수영장, 목욕장, 농 예·축산·어류양식용 시 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 도로 사용되는 것	자동화재탐지설비,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 설비
3.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	원자력발전소, 중·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	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 수설비
4. 「위험물 안전관리 법」 제19조에 따른 자 체소방대가 설치된 특 정소방대상물	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제조 소등에 부속된 사무실	옥내소화전설비, 소화용수 설비, 연결살수설비 및 연 결송수관설비